

##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항 단서중 '군계획을 심의할 경우에는 관계 군수는' 을 '시(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한다)·군건설종합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·군수는' 으로 한다.

제2조 제3항 본문중 '부지사, 기획관리실장, 지역경제국장및 건설도시국장' 을 '행정부지사, 기획관리실장, 공업경제국장 및 건설교통국장' 으로 한다.

제3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 본문중 '부지사' 를 '행정부지사' 로 한다.

제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시(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한다)·군 건설종합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
제7조의2 제2항 본문중 '건설도시국장' 을 '건설교통국장' 으로 한다.

제10조 제2항 본문중 '간사는 지역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계획과 지역계획계장이 된다' 를 '간사는 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계장이 된다'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